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 2930

제출연월일 : 2021년 10월 15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남북관계,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예탁하여 향후 남북교육류협력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예치금이 15억 5,000만원에서 19억 2,231만원 으로 당초계획 대비 24%인 3억 7,231만원 증가함

〈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〉

(단위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
구분	당초계획 (A)	변경 (B)	증감 (B-A)	
 계	2,000,000	2,002,317	2,317	
교 특 회 계 전 입 금	1,000,000	1,000,000	ı	
이 자 수 입	_	2,317	2,317	
예 치 금 회 수	1,000,000	1,000,000	_	

지 출 계 획				
구분	당초계획 (A)	변경 (B)	증감 (B-A)	
계	2,000,000	2,002,317	2,317	
비 융 자 성 사 업 비 (교수학습활동자원)	450,000	80,000	△370,000	
기 본 경 비	0	0		
예비비 및 기타 (예 치 금)	1,550,000	1,922,317	372,317	

- 수입계획 변경
 - 이자수입 2,317천원 증가: (당초) 0원 → (변경) 2,317천원
 ※2020년 12월 말 예금이자 변동액 및 2021년 6월 예금이자 반영
- 지출계획 변경
 - 「교수-학습활동지원」 3억 7,000만원 사업비 감액
 - : (당초) 4억 5,000만원 → (변경) 8,000만원
 - 「예비비 및 기타(예치금)」 3억 7.231만원 예치금 증가
 - : (당초) 15억 5,000만원 → (변경) 19억 2,231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민주시민기획·운영팀 이희숙(☎ 6973-9832)